32회 공인중개사대비 기본이론 - 핵심정리(6회차) 에듀윌 제공



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

한병용 강사

- □ 공인중개사법령에 규정된 행정처분 내용(추가) 및 벌칙
- 4) 핵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(=폐업신고 후 다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핵정처분)
 - ① 폐업신고 전의 지위승계 :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후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때에 는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.
 - ② 폐업신고 전에 받은 행정처분효과의 승계 :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업무정지 및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**그 처분일부터 1년**간 다시 중 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(=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)에게 승계된다.
 - ③ 폐업신고 전 이 법 위반행위의 승계 :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등록취 소 및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**있다**. 다만,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.
 - 1.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업신고를 한 날부터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날까지의 기간(=폐업기간)이 3년을 초과한 경우 : 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.
 - 2.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: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다.
 - (2)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: 자격취소, 자격정지
 - (1)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취소사유(취소하여야 한다)
 - 부/ 양/ 지/ 역
 - (2)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정지사유(할 수 있다)
 - 속/ 인/ 확인/ 거짓/ 날인/ 금지(법제33조 제1항의 금지행위 10가지 전부)
 - (3)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: 지정취소(할 수 있다)
 - 부/ 영/ 정/ 사/ 1

6. 벌칙

- (1) 행정형벌: 징역형 또는 벌금형
 - ①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사유
 - **무/ 부/ 금**(법 제33조 제1항 및 제2항의 금지행위 15가지 중 아래 ② 4가지 외 전부)
 - ②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사유
 - **이/ 양/ 속/ 사2/ 정/ 비/ 사/ 4금**(법33조 제1항의 금지행위 중 4가지 : **매/ 무/ 수/ 거**)
- (2) 행정질서벌: 과태료
 - 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사유 부당광고/ 설/ 연수/ 영/감/ 감/ 시/ 용/자료제출
 - ②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사유 이/ 보/ 게/ 명/ 문/ 폐/ 반납

□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령

1. 부동산거래계약의 신고 의무(외국인등 포함)

(1) 신고기한: 매매계약·공급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

but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하여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.

- (2) 신고관청 : 부동산 등 소재지 시장(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경우) · 군수 또는 구청장
- (3) 신고대상거래: 다음의 매매계약·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
 - ① 부동산(토지, 건축물)에 대한 매매계약
 - ② 8개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
 - ③ 위 ②에 따른 공급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한 매매계약
 - ④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한 매매계약

(4) 신고사항

구분	신고사항
1) 공통	①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② 거래대상 부동산등의 소재지·지번·지목 및 면적, 종류
	③ 계약 체결일,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④ 실제 거래가격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·교부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의
	인적사항 및 중개사무소의 상호·전화번호·소재지 ⑥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
2) 법인이 주택	123456 +
의 거래계약을	⑦ 법인의 현황(법인의 등기 현황 및 법인과 거래상대방 간의 관계)
체결하는 경우	 ⑧ 법인이 주택의 매수자인 경우에는 <u>주택 취득 목적 및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및 지급방식, 임대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</u> ※참고: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신고서 및 주택취득자금조달등계획서에 자금의 조달계획을 증명하는 서류(예금잔액증명서등)를 첨부해야 한다.
3) 법인 외의	123456 +
자가 실제 거	⑦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및 지급방식
래가격이 6억	※참고 :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고서
원 이상인 주택	및 주택취득자금조달등계획서에 자금의 조달계획을 증명하는 서류(예금잔액
을 매수하거나	증명서등)를 첨부해야 한다.
투기과열지구	⑧ 거래대상 주택에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, 입주 예정 시기 등 거래대
또는 조정대상	<u>상 주택의 이용계획</u>
지역에 소재하	
는 주택을 매	
수하는 경우	※참고 : 거래당사자 중 국가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⑦⑧은 신고사항 아님

(5) 신고 의무자 및 신고방법

- ① 직거래시 : 거래당사자가 공동신고(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)
 - 신고방법 : 신고서에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하여 그 중 1인이 제출
 - © 일방이 거부시 단독신고 가능하며, 이 경우 신고서 + 거래계약서 사본 및 단독신고사유서 제출
 - 거래당사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신고서의 제출 대행 가능

②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·교부한 경우 :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

- 신고방법 :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
- © 공동 중개시는 공동으로 신고해야 함
 - 일방의 거부시 단독신고 가능하며, 이 경우 신고서 + 거래계약서 사본 및 단독신고사유서 제출
- ⓒ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가 제출 대행 가능

(6) 신고관청의 조치 : 신고내용 확인 후 지체없이 신고필증 발급

- 신고인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는 매수인은 **검인을 받은 것**으로 본다.
- (7) 금지행위 : 누구든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①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 하는 행위
 - ② 부동산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는 행위
 - ③ 거짓으로 부동산거래신고 또는 부동산거래의 해제등 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 조하는 행위
 - ④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 동산거래신고를 하는 행위
 - ⑤ 부동산거래신고 후 해당 계약이 해제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 산거래의 해제등 신고를 하는 행위

(8) 검증체계의 구축 및 신고내용의 검증

- ① 국토교통부장관 : 부동산거래가격의 검증체계를 구축·운영해야 한다.
- ② 신고관청 :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해야 하며, 그 검증결과를 세무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.
- ③ 세무관서의 장 : 신고내용을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.

(9) 신고내용의 조사

- ① 신고관청 : 신고인에게 거래대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② 신고관청 : 조사 결과를 시·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시·도지사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③ 국토교통부장관 : 신고내용을 직접 또는 신고관청과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.

(10) 부동산거래신고 후 별도의 조치사항

- ① 부동산거래의 해제등 신고
 - → 거래당사자는 거래계약이 해제,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, 해제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해제등 신고를 해야 한다.
- 일방이 거부한 경우는 해제등신고서에 해제등이 확정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단독신고사 유서를 첨부하여 단독신고 가능
- but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하여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을 한 경우에는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.

-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·교부하여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 가 해제등이 확정된 날부터 **30일 이내에 해제등 신고를 할 수 있다.**
 - 공동중개시 공동으로 해제등 신고를 할 수 있으며, 일방이 거부한 경우는 해제등신고서에 해제 등이 확정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단독신고사유서를 첨부하여 단독신고 가능
- ② 부동산거래의 정정신청 :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내용 중 일부 사항이 잘못 기재된 경우 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.
- ③ 부동산거래의 변경신고: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내용 중 일부 사항이 변경된 경우 등기신청 전에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.

□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의무(외국인등 포함) - 2021. 6.1. 부터 시행

- (1) 신고기한 :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
- (2) 신고관청 : 부동산 등 소재지 시장(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경우) · 군수 또는 구청장
- (3) 신고 대상: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
 -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는 임차가구 현황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만 신고 의무가 적용된다.- 신고대상인 금액, 지역 미정
- (4) 신고사항: 미정
- (5) 신고의무 여부
 - ① 직거래시: 거래당사자가 공동신고(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)
 - ⊙ 신고방법 : 신고서에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
 - © 일방이 거부시 단독신고 가능
 - □ 신고의무의 면제(신고의제)
 - 1.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.
 - 2.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(또는 변경신고)를 하는 경우 이법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(또는 변경신고)를 한 것으로 본다.
 -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·교부한 경우: 신고의무 규정 없음
- (6) 신고관청의 조치 : 신고내용 확인 후 지체없이 신고필증 발급
 -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의 접수를 완료한 때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**확정일자를 부여** 한 것으로 본다.
- (7) 금지행위 : 부동산거래신고규정 준용
- (8) 검증체계의 구축 및 신고내용의 검증 : 부동산거래신고규정 준용
- (9) 신고내용의 조사 : 부동산거래신고규정 준용
- (10) 부동산거래신고 후 별도의 조치사항

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를 한 후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, 차임 등 임대차 가격이 **변경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** 변경 또는 해제가 확 정된 날부터 **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**. 다만, 임대차계 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.

2. 외국인등의 부동산등의 취득 등에 관한 특례

- (1) 외국인등의 부동산등의 취득신고 · 계속보유신고 의무
 - ① 계약으로 취득(부동산거래신고대상계약은 제외) :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
 - ② 계약외 이유로 취득(상속,경매,판결,합병,환매권행사,건축물의신축등) :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
 - ③ 외국인등으로 국적을 변경하여 부동산등을 계속보유 : 국적변경일부터 6개월 이내

(2) 외국인 등의 토지취득허가

외국인등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다음에 해당하는 구역등에 있으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으로 부터 토지취득허가를 받아야 한다. 허가×계약 또는 부정하게 허가를 받고 계약 : 무효 + 2년/2천만원 다만,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① 군사시설보호구역등
- ② 지정문화재보호구역
- ③ 생태·경관보전지역
- ④ 0:생생물 특별보호구역

□ 참고 : 외국인이 부동산거래신고, 취득등 신고를 한 경우

신고관청은 거래 및 취득등 신고한 내용과 허가한 사항을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, 시·도지사는 제출받은 내용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

but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

3. 토지거래허가제도

(1) 개념 : 토지거래허가구역안의 토지에 대하여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유상으로 소유권, 지상권을 취득·이전하려는 경우(예약을 포함)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함

(2) 허가구역 지정

- ① 지정지역 :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,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및 상승우려가 있는 지역
- ② **지정기간** : 5년 이내
- ③ 지정권자
 - ①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·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: **국토교통부장관**
 - ©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·도 안의 일부지역인 경우 : **시·도지사**
- ④ 지정후 지체 없이 공고 ⇨ 공고 후 5일 후에 효력발생 : 매매계약, 교환계약, 지상권설정 및 이 전계약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함.(허가×계약 또는 부정하게 허가받고 계약 : 무효 + 형사처벌)
- ⑤ **허가신청** ⇨ 허가관청 : 15일 이내에 허가처분, 불허가처분, 선매협의사실을 통지해야 함 ※선매 : 국가, 지자체등이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<mark>감정가격을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음</mark>
- 허가를 받은 경우 :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.

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.

-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: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1개월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- **불허가처분에 대한 매도인의 매수청구** ⇒ 국가,지자체등이 <mark>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음</mark>

(3) 허가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의 허가목적대로 이용의무

- ① 이용 의무기간 : 개인의 주택용지 · 농업등 종사목적(2년), 사업시행목적(4년), 현상보전목적(5년)
- ② 이용× 경우 이행강제금부과 : 취득가액의 10/100 범위 안에서 부과 (방치:10/100 , 임대:7/10, 무단변경이용:5/100)

4. 포상금

(1) 포상금지급의 신고대상 및 포상금액

- ① 실제거래가격을 거짓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한 자 부과된 과태료의 20%(1천만원 상한)
- ②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거짓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자 부과된 과태료의 20%
- ③ 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거짓으로 해제등 신고를 한 자 부과된 과태료의 20%
- ④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, 변경신고, 해제신고를 거짓으로 신고한 자 부과된 과태료의 20%
- ⑤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자 50만원
- ⑥ 토지거래허가 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한 자 50만원
- (2) 포상금 지급관청 : 신고관청 · 허가관청
- (3) 포상금 지급에 드는 비용 : 시 · 군이나 구의 재원으로 충당
- (4) 포상금지급기한 : 포상금지급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
- (5) 포상금지급× : 공무원이 신고, 위반행위자·위반행위에 관여된 자가 신고, 익명·가명으로 신고